

## 자산보관 계약에 대한 변경약정서

본 자산보관계약에 대한 변경약정(이하 “본 변경약정”)은 2020년 4월 28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위탁자 주식회사 엔에이치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13층(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수탁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수탁자”)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신관 13층 수탁업무센터

### 전 문

“위탁자”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이며,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이다.

“위탁자”과 “수탁자”은 2018년 12월 12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에 따라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보관 업무 및 그 부수업무(이하 “자산보관”이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산보관계약(이하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변경약정의 당사자들은 본 변경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산보관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에 본 변경약정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변경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본 변경약정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자산보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변

경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본 변경약정에서 언급된 서류, 계약 등은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제 2 조 (보수 지급 시기의 변경)

자산보관계약서 제23조(보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항의 보수는 결산기 별로 구별하여 지급한다. 보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 및 등록을 취득한 후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위탁자”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연간 금 일천육백만원(W16,000,000)(VAT 별도, 이하 동일), 결산기별로 금 팔백만원(W8,000,000)으로 정하고 그 지급은 결산일 종료 후 **“위탁자”의 해당 결산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지급 한다. 다만 “수탁자”의 수탁 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결산기 수수료는 180일에 대한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이 초과될 경우 매 결산기 단위의 수수료와 6개월이 초과된 기간을 180일에 대한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날 발급하는 것으로 한다.

## 제 3 조 (효력)

- (1) 본 변경약정의 효력은 본 변경약정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 (2) 본 변경약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자산보관계약은 본 변경약정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 (3) 본 변경약정과 자산보관계약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변경약정이 우선한다.
- (4) 본 변경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변경약정에서 자산보관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은 자산보관계약의 각 일부를 구성하고 일체의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자산보관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개별약정 및 제출서류에 자산보관계약 또는 본 변경약정 중 자산보관계약의 변경 대상 조항이 인용되거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 등의 해당 규정은 본 변경약정에 따라 변경된 자산보관계약 또는 내용을 인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 (5) 본 변경약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산보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4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변경약정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변경약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음페이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약정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일자에 각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본 변경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도록 한 후, 각자 보관하기로 하였다.

## 위탁자

주식회사 엔에이치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13층(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대표이사 : 박 영 희



수탁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신관 13층 수탁업무센터

대표이사 : 손 병 환

